

1.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1)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과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타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 데이터 상태 유지, 연계 중단 시 사전통보 등 협의 사항을 정함
-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제공 실적 등 평가 기준 내용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영 제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유 중인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물리적·기술적 특징, 개인정보 관리 기준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공동 활용 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전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3. 그 밖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의 기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

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운영·관리 실태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플랫폼 등록 건수, 제3자로부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획득 성과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기여도
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건수, 서비스 만족도, 불만사항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실태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